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시장위기 대응능력 제고

김 정 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jkkim@mocie.go.kr

1974년 OECD 회원국들은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 도모와 석유공급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에너지프로그램 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였다. 동 협정에서는 비축유 확보, 석유수요억제, 연료 전환, 여유생산능력 확보 등의 석유위기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IEA는 이 방안들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비상응동 시스템과 공동비상대응방안을 갖추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IEA에 가입하여 회원국간 공동위기대응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3년 1월에는 이라크전을 대비하여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금년 4월에는 고유가 상황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하여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IEA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IEA의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석유위기 발생시 IEA와 신속,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공급 중단 혹은 가격폭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IEA의 비상대응메커니즘과 부합하는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위기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1.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개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제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에 OECD 회원국들이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 초기에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서독, 네덜란드 등 16개 OECD 회원국이 참여하였으며, 현재에는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EA는 OECD내의 한 부속기구이기는 하지만 OECD와는 별도의 가입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가입요건은 OECD 회원국으로서 석유비축량이 석유수입량 기준으로 90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에는 1996년에 가입하였으나 IEA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다가 2002년 3월에 요건을 충족하여 26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IE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폴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뿐이다.

IEA는 산유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 OPEC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석유소비국이 결성한 기구로서 기본적으로는 석유위기 대한 공

동 대응, 에너지정책 포럼, 에너지기술 연구협력체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활동영역을 꾸준히 넓혀 가고 있다.

IEA의 설립목적이자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은 국제에너지프로그램 협정(IEP Agreement)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협정은 IEA 설립을 추진하였던 16개 OECD 회원국 대표가 1974년 11월 파리에서 서명한 것으로서, IEA 설립의 근거가 되는 협정이며 국제법상 조약(treaty)의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IEA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위해 2002년 3월 동 협정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바 있다.

동 협정문에는 IEA의 설립취지, 비상시 석유자족(Self-sufficiency), 수요억제, 석유할당, 비상유통시스템(Emergency Sharing System)의 발동, 정보체계 구축, IEA와 산유국간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 동 협정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2. IEA의 비상대응시스템

### 가. 석유위기 대응방안

IEA의 석유위기 대응방안은 크게 비상비축유 확보, 석유수요억제, 연료 전환, 여유생산능력 확보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IEA는 사무국내에 설치된 비상문제상설그룹(SEQ)을 통하여 회원국의 비축의무 준수 여

부와 석유수요억제조치의 구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IE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다.

#### 1) 비상비축유(Emergency Reserves)

국제에너지프로그램 협정 제2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비상시에 석유를 자족(self-sufficiency)할 수 있는 수단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전년도 일평균 순수입 물량의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축유를 보유해야만 한다. 비축유를 보유하는 것은 IEA 회원국 대부분이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국제에너지프로그램에 따르면 IEA의 모든 석유 순수입국은 90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해야 하며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과 같은 석유 순수출국은 비축유 보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1996년 OECD 가입 당시 90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축유 확대 노력으로 2001년 4월 IEA 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았다. 2002년 3월 IEA 가입 후에도 우리나라는 비축물량을 꾸준히 확대하여 2004년 3월 말 현재 정부 및 민간비축을 합쳐 105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유비축의 형태는 민간비축, 정부비축 및 정부기관(agency)비축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정부비축과 정부기관비축을 공공비축이라고 한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형태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영국은 민간비축만을 실

시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민간 및 정부비축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은 민간 및 정부기관비축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민간, 정부 및 정부기관비축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 정부비축유를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업자가 민간비축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민간 및 정부비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석유수요억제(Demand Restraints)

국제에너지프로그램 제5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석유공급위기시 자국의 석유 최종소비를 7~10%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석유수요억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수요억제란 석유위기시에 취해질 수 있는 단기적인 석유 소비절감조치를 의미한다. 일부 정부는 위기가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석유수요억제조치를 실시하기보다는 90일분을 초과하는 비축유에 대해 방출을 실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회원국 정부가 수요억제조치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상황, 석유위기의 성격과 지속기간 및 비축물량 수준 등에 달려 있다. 비상문제상설그룹(SEQ)은 회원국의 석유수요억제조치들을 평가하고 실제로 그 조치들이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석유공급위기상황에서 석유수요억제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석유공급위기시 석유수요억제조

치들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1월과 금년 4월에 발표된 고유가대책에 동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공급위기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비축유를 방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석유수요를 억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IEA 회원국간 의견이 분분하다. 2000년 IE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1/3의 회원국이 초기 단계에서 석유수요억제조치를 주요 대응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다른 1/3은 비축유 방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국은 초기 단계에서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 3) 연료 전환

IEA 회원국이 석유를 다른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1970년대 이래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천연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 부문에서 연료를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감소하였다. IEA 회원국의 석유 화력발전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중반에는 약 25%였으나 2000년 무렵에는 약 7%로 감소하였으며 고유가가 지속되는 기간일수록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 4) 여유생산능력

산유국은 석유위기 발생시 자국내 석유를 증산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산유국은 석유공급위기시에 자국의 산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유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공급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말미암아 매일 약 430만 배럴의 석유가 국제시장에 공급되지 못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산유국이 석유를 증산하여 약 370만 배럴의 물량이 2개월 이내에 보충되었다. 그러나 현재 IEA 회원국 전체를 통틀어 석유 증산능력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일부 산유국만 여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나. 비상대응 메커니즘

IEA는 국제에너지프로그램 협정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비상유통시스템(ESS)과 공동비상대응방안(CERM)을 마련하였다. 비상유통시스템(ESS)의 목적은 회원국에 대한 석유공급의 감소 정도가 IEP협정에 규정된 한계치를 넘어설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조치를 발동하고, IEA 회원국간 가용 석유공급량을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조치 발동에는 전체적 발동과 선택적 발동이 있는데 ‘전체적 발동’은 IEA 회원국 전체가 공통으로 석유공급의 감소를 경험할 경우 발동되며, ‘선택적 발동’은 일부 회원국에 한정하여 석유공급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발동된다.

한편 CERM은 IEP협정의 비상 할당체제를 가동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석유공급의 상당량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동된다. CERM의 목적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위기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IEA 사무국이 신속하고 실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상유통시스템(ESS)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ESS의 발동에는 경직성이 존재하는 반면, CERM은 석유공급 감소의 규모에 관계없이 발동이 가능하며 개별국가의 상황에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 3. IEA 주요 국가의 석유위기 대응현황

#### 가. 미국

미국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절차에서 에너지부문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안보비상운영실(Security and Emergency Operations)은 비상시 개별 주(州)와의 연락 등 비상대응에 필요한 국내적인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는 위기대응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 대응팀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미국의 석유위기 대응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급위기가 다른 경제적 손실의 방지”에 있다. 미국은 IEA의 비상비축유 확보를 위해 전략비축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석유공급위기가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취하는 정책은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s: SPR)를 조기에 방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위기시 비상대응책인 전략비축유(SPR)제도의 설립, 국제에너지프로그램(IEP)협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한 내용들은 「에너지정책및절약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포함되어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은 비상대응조치의 주요 요소로서 모든 전략비축유는 원유로만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2000년 당시 하루 최대 41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에너지정책및절약법」에 따라 전략비축유의 방출 및 배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비축물량에 대한 권한은 없다. 만일 심각한 에너지공급위기가 발생하거나 국제에너지프로그램(IEP)하에서 미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비축유 방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은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이 있을 경우 비축유는 가격경쟁판매방식에 의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판매된다.

미국은 민간회사에 비상비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민간비축을 위한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정책및절약법」에 따라 수입업자, 정제업자 및 제품생산업자에게 전년도에 자신들이 수입, 정제 및 생산한 양의 3%를 확보, 저장 및 유지할 것을 요구함

으로써 전략비축유의 일환으로 민간(산업)비축을 창출할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 제도를 시행한 적은 없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FEMP)과 「공공정보프로그램」 등 두 가지의 석유수요억제조치를 보유하고 있다. FEMP는 석유위기시 청사건물의 연료대체(fuel substitution) 등을 통해 연방정부기관들의 석유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공공정보프로그램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대중, 산업계, 주(州) 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발적 석유수요억제를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미국은 수요억제를 석유공급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석유공급위기는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지난 두 차례의 석유위기시 국가적 차원의 수요억제조치가 에너지자원의 그릇된 배분을 초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 나. 일본

일본에서 석유공급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산업성(METI)의 자원에너지청이 국내 비상대응조치의 이행 및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비상시 석유의 적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비축법」, 「일본석유공사법」, 「석유수급적정화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석유공사법」 및 「석유비축법」에 근거하여 비상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수입업자, 정유회사 등 민간에 대해

서는 「석유비축법」에 의거하여 비축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석유수입업자는 수입량에 상관없이 석유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자신이 수입하는 제품과 동일한 유종을 비축하여야 한다. 각 수입업자의 필수 비축량은 전년도 활동규모에 기반하여 정해진다. 2004년 초까지 정부비축물량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는 일본석유공사(JNOC)가 담당하였으나 일본석유공사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비축과 관련한 기능은 2004년 2월 말 신설된 석유가스금속공사(JOGMEC)로 이전되었다. 일본은 1974년부터 석유비축을 시작하여 2004년 3월 현재 10개의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민간비축으로 출발, 1978년부터 정부비축을 실시하였다. 정부비축유는 「일본석유공사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METI)의 지시에 따라 방출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회사의 비축시설 설립 및 유지를 지원한다. 의무비축유를 보유한 민간회사들은 2개월에 한 번씩 비축수준 및 기타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경제산업성에 보고하기 때문에 매달 비축수준의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석유비축법」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들에 비축량을 늘리도록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석유수급적정화법」 및 「전력산업법」에 의하여 강제적인 수요억제조치를 실시할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심각한 석유위기시 에너지절약조치

및 적정 수요억제조치를 실시한 후에 집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반대중과 산업계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수요억제조치를 시행하고 그들에게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영국

영국에서 위기상황 대처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처는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소속의 국내위기대응팀(CCU)이다. CCU는 신속히 소집 가능하며 위기사 각료급회의를 개최한 후 석유공급위기 대응과 관련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CCU는 석유위기 발생시 통상산업부(DTI)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왔다.

석유비축 및 비상계획과 관련해서 영국정부는 시장메커니즘을 존중하여 산업계 주도의 협약을 권장하고 이를 지지해 준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시장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감독하며 영향의 정도를 산업계와 상의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적정한 양의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영국정부는 일시적인 공급 차질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서 수요억제보다는 비축유 방출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공급 차질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수요억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영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과 수요억제조치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냐는 위기의 성질(즉 공급위기의 규모와 원인)과 위기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될 것이다.

영국의 1976년 「에너지법」은 정부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취득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일시적인 공급위기의 경우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억제조치는 대부분의 위기상황에서 즉각 발동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요억제조치가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석유제품할당계획(OPAS)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자동차 연료 배급에서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억제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 배급제의 경우 그 실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석유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 4. 석유위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가. 개요

석유위기는 크게 석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와

수급에 차질이 없이 가격만 급상승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유위기가 함은 전자를 일컫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2년 3월에 IEA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석유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IEA 회원국간의 공동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IEA체제내의 위기극복시스템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IEA 가입 이후 IEA 회원국간 공동대응시스템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석유위기는 없었다. 다만 이라크전쟁 발발로 인해 국제유가가 대폭 상승해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음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하고 있다.

### 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 (2003년 1월)

정부는 2003년 초 이라크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베네수엘라 석유노동자 파업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가상승 단계별 종합대책을 통해 i) 국제유가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ii) LNG 물량 확보에 집중 노력하면서, iii) 범국민적인 소비절약대책을 추진하여 물가와 경제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에 최대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대책은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

평균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는 이동평균이 배럴당 29달러 미만인 경우, 2단계는 이동평균이 29달러 이상 35달러 미만인 경우, 3단계는 이동평균이 35달러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유가를 시장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정부는 배럴당 29달러를 상회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세·내국세(교통세, 특소세 등)·수입부과금 조정 등 종합적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석유비상대책기구(石油非常對策機構)」를 가동하여 정유사·수입사·대리점 등의 도입물량, 수송상 문제점 및 국내외 가격동향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발적 에너지소비 절약 시책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제 참여 권고,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소에 대한 가동시간 조정 등 자발적 소비 절약 권고를 실시하였다.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은 경우에는 2단계 대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32달러대까지는 관세·내국세·수입부과금 등의 조정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배럴당 29달러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석유수입 부과금을 리터당 6원만큼 인하하도록 하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상승하여 국내유가를 배럴당 29달러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월단위로 관세·내국세·석유수입 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

럴당 33달러를 상회할 경우 추가부담의 일부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2단계 대책에서는 1단계의 자발적 에너지소비절약을 의무적 수요관리조치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전력직접부하제어(負荷制御)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을 발동하며 관할지자체(地自體)의 단속을 통해 옥외조명 제한,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강기 격층 운행 등 강력한 소비억제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5달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집행, IEA 등과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등 가용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도록 하였다.

#### 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2004년 4월)

정부는 금년 들어 이라크사태가 악화되어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 4월 6일 향후 고유가 상황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처하고자 2003년 1월에 이라크戰을 대비하여 수립한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수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요인에 의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수급 차질 발생과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석유공급 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 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하였다. 반면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 또는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석유수급 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2003년에는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29달러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새로 보완된 계획하에서는 배럴당 32달러를 정부의 가격안정화조치 개시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유가변동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과 함께, 국제유가가 걸프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절적 요인·국제투기자금의 개입 등으로 연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pm 2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는 지난해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인하·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별 대응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축유 확충, 국내외 유전 개발 참여,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아울러 우리 경제를 에너지 고효율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5. 결어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IEA에 가입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IEA가 제공하는 석유 위기대응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였다. 현재 비축물량 105일분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 IEA의 최저 요구수준인 90일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IEA 이사회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에너지시장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2002년에는 비상문제상설그룹(SEQ)이 2년마다 실시하는 ERE(위기대응훈련)에 참여하여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위기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상승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위기대응은 에너지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과거에는 국제 석유시장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IEA 가입으로 IEA의 석유비상 유통시스템 활용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IEA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석유위기 발생시 IEA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공급 중단 혹은 가격폭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

우 IEA의 비상대응 메커니즘과 부합하는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

너지안보와 위기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IEA. 2001. "Oil Supply Security: The Emergency Response Potential of IEA Countries in 2000."  
\_\_\_\_\_. 2002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Review."  
\_\_\_\_\_. 2002b.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The United States Review."  
\_\_\_\_\_. 2003.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Japan Review."

\_\_\_\_\_. 2004. "The History of the IEA: Supplement to Volumes 1, 2, & 3."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IEA 에너지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석유공사. 2001. 『IEA와 회원국의 석유위기 대응체계』.